

인천지방법원 2022. 1. 12 선고 2021가단215120 판결 [사해행위 취소]

전 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샘 담당변호사 서경원

피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

변 론 종 결 2021. 12. 15.

판 결 선 고 2022. 1. 12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① 피고와 B이 2016. 11. 16.~2017. 1. 31. 맺은 3개의 증여계약(☞ 수증금액 합계 1억 1,600만원, 이하 편의상 통틀어 ‘이 사건 계약’이라고 한다)을 모두 취소함과 아울러,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,6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, “(현재 원고에 대하여 거액의 구상원리금 상환채무를 지고 있는) B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인천 부평구 C외 3필지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거래가액 3억 5,800만원에 타에 매각하고, 받은 매각대금 중 2016. 11. 16. 36,000,000원, 2016. 12. 26. 30,000,000원, 2017. 1. 31. 50,000,000원 합계 1억 1,600만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습니다.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는 F 주식회사의 채권최고액 2억 7,6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, 매매대금 3억 5,800만원에서 실 대출금 2억 3,000만원을 공제하면 실제 지급받은 매수대금은 1억 2,800만원에 불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, B은 그 돈 중 대부분의 돈인 1억 1,600만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증여하였고, 그 후 B의 사업체인 G가 부실처리되었습니다. … 즉, B은 자신의 전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여 거의 전액을 2017. 1. 31.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송금한 후 약 4개월 만인 2017. 5. 16.부터 1억 7,000만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연체를 반복하다가, 결국 2017. 10. 17. 보증사고를 일으켰습니다”라고 주장하면서,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약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가액배상을 구한다.

나. 그러나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,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.

(1) 먼저,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이 증여(☞ 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,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” 그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)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, 그밖에 다른 ‘법률행위’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1억 1,600만원이 송금(☞ ‘사실행위’)되었는지도 여전히 불명확하다.

(2) 다음으로,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마련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 그런 채권도 (예외적으로) 채권자취소권의

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지만, 이 사건에서 B이 위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1억 1,600만원을 송금할 무렵으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거나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여전히 부족하다.

2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.

판사 박관근